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(☎02-879-6635)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

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공 고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700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지 공사송달

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,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관련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

다. 공 고 내 역

□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

연번	행정동	위반 소재지	위반 층(호수)	위반 면적(m ²)	건축주	주 소	사유
1	신사동	남부순환로167길 * (신림동 464-*)	옥상	25	조*순	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67길 *, 50*호(신림동, 목은)	폐문 부재

라. 서 류 명 칭 :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지 공사송달

마. 시정촉구기간 : 2021. 05. 27.까지

바. 유 의 사 항

○ 상기와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 기간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촉구하오며, 시정 시 결과를 우리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(☎ 879-63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가. 공 고 기 간 : 2021. 04. 22. ~ 2021. 05. 06.

나. 공 고 장 소 :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703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에정사항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,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
5. 공고대상 :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
일반음식점	2018-0094446	포차세끼	김**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9길 6, 2-3층 (신림동)

6. 공지사항
-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2021년 05월 0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(☎02-879-7258)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704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에정사항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,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

5. 공고대상 :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
일반음식점	2020-0094942	총각네국수	김**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14길 37, 1층 (신림동)

6. 공지사항
-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2021년 05월 0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(☎02-879-7258)

신고사항 직권말소

2. 공고기간 : 2021. 04. 22. ~ 2021. 05. 07.
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1. 05. 09.
4. 처분 근거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제4항,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어,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
신고사항 직권말소
2. 공고기간 : 2021. 04. 22. ~ 2021. 05. 07.
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1. 05. 09.
4. 처분 근거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제4항,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705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에정사항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,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